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중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 을 “물품” 으로, 동조 제3항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 을 “분임물품출납원” 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중 “물품당 단가50만원이상인 물품” 을 “정수물품” 으로 한다.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중 제4항 “3백만원이상인 물품” 을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으로 한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제2항 “중요물품및 정수물품” 을 “정수물품” 으로, 「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을 「 “정수물품”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 세의 면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직할시남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한다.

제3조(경감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시행 한다.